

95년도 공정거래 政策方向

1. 기본 정책 방향

WTO 出帆의 元年이 되는 1995년의 公正去來政策의 기본 방향은 경제·사회 각 부문에 걸쳐 경쟁을 促進시키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시킴으로써 세계화를 뒷받침하고 국민생활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금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바뀌었다. 이를 계기로 과거와 같은 개별적인 事案의 해결 기능보다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경쟁정책기능을 강화하여 세계화 시대에 맞게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競爭을 制限하는 각종 법령, 제도 및 慣行을 철저히 조사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관리 제도, 카르텔 제도, 기업결합심사 제도 등 각 부문의 외국의 공정거래 제도를 심도있게 연구하여 우리 공정거래 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둘째, 독과점 관리 강화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 행위와 談話에 의한 가격인상 행위 등을 철저히 감시하여 시정해 나가며 또한, 기업집단의 무리한 확장을 억제하고 기업의 所有分散을 유도함으로써 그룹 중심의 船團式 經營方式을 지양하도록 하겠다.



김 선 옥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차장

셋째, 개혁 차원에서 국민생활 질서를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완전히 없애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즉, 부실공사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건설하도급 위반행위를 엄단하고, 하도급 의존도가 높은 제조하도급에 대해서도 감시의 정도를 늦추지 않겠다. 특히, 국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분야 및 국민의 위생·안전을 위협하는 분야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넷째, 신고가 들어온 후에야 조사를 벌이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문제가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企劃調査를 실시하여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2. 주요 과제별 推進方向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 및 공정거래 제도의 선진화

우리 경제의 운용 방식이 시장경제 원리에 바탕을 둔 자율적인 운용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촉진하기 위하여 경제 주체들이 지켜야 할 경제의 기본질서 규범의 확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 기업이 無限競爭에서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법령이나 제도 및 慣行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즉, 현행 우리나라의 競爭制限規定이나 조치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關係部處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정비해 나갈 것이다. 특히, 경쟁을 阻害하는 새로운 규제 도입은 사전에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원천적으로 방지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단체 및 협회가 행하는 각종 규제의 완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자 한다. 즉, 競爭制限의 定款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48개 단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자 및 고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규제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60개 단체를 추가로 선정하여 관련규정 및 定款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WTO體制出帆에 따라 선진국 간에 경쟁정책을 國際規範化하려는 경쟁라운드에 대비하여 우리의 각종 공정거래 관련제도 및 慣行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관리 제도의 합리적 조정, 카르텔에 대한 규제 강화,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개선, 지적 재산권 남용 행위 방지 등 공정거래 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각국의 공정거래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조속히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OECD, UNCTAD 등 국제기관과 미국 및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즉, OECD 경쟁정책위원회 및 UNCTAD, APEC의 경쟁정책관련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韓美經濟協力對話(DEC), 일본, 프랑스 및 유럽연합(EU) 등과의 雙務協力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제력집중 억제 및 독과점 남용행위 방지

대규모 기업집단의 所有分散의 유도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작년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고,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즉, 대규모 기업집단의 所有分散을 유도하기 위해 所有分散과 재무구조 등이 優良한 기업의 기준을 설정하고 소유분산이 잘된 기업은 출자한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업집단의 무리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순자산의 25%로 강화된 출자한도 관리를 엄격히 하고 계열기업간 상호 채무보증을 내년 3월까지 자기 자본의 200% 이내로 축소하여 그룹 중심의 船團式經營方式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상호간의 부당한 内部去來行爲를 시정하여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 나가고자 한다. 즉, 30대 기업집단 이외에 대해서도 계열기업수가 많은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不當内部去來에 대한 신고가 많거나 제보가 있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이미 調査를 받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대규모 기업집단의 不當内部去來行爲를 원천적으로 근절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獨寡占濫用行爲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138개 품목, 316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15개 독과점 품목과 5개 사업단체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연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出庫調節, 價格談合의 사실이 있으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부과 등 제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지난 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非價格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제도, 즉 실행 기간 동안의 위반 사업자의 매출액의 3% 이내를

不當内部去來에 대한 신고가 많거나 제보가 있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대규모 기업집단의 不當内部去來行爲를 원천적으로 근절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적극 활용하여 독과점 사업자의 남용 행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

한편, 국제화의 진전에 따른 企業結合增加에 대비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심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당해 시장의 경쟁제한 여부를 기업결합 당해회사의 현시점의 국내 시장 점유율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장이 개방화된 상황에서는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 가능성도 고려하여 企業結合審査時 현재의 당해 시장의 경쟁 제한성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경쟁 제한성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기업결합에 의하여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기준을 보완·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하여 먼저, 不實工事防止 차원에서 지하철, 교량, 터널 및 기타 주요시설 공사 100개소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하도급 의존도가 높은 섬유, 전자,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건설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入札參加資格을 제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자 한다. 즉, 검찰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價格談合行爲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등의 엄격한 조치를 하고자 한다.

또한, 일반 국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

건설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자 한다.

속과 근원적인 방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먼저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談合에 의한 서비스 요금 등 가격 인상을 철저히 차단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生活改革 차원에서 끼워팔기, 差別的 去來,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중과하고 상습적인 법위반업체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刑事罰適用을 강화함으로써 범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당국과 協議會를 설치·운영하여 고발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형사고발의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가격 및 入札談合 등 부당한 공동행위, 보건 위생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 탈법 정도가 심한 하도급 거래 행위중 상습·고의 정도가 큰 경우가 그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공정거래 제도 자율준수 분위기 확산

경제의 개방화·자유화·세계화가 가속화되는 무한경쟁 하에서 공정경쟁 질서의 定着을 위해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시정조치보다 자율적으로 기업 스스로가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민간 부문의 자율성 暢達이라는 공정거래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경쟁질서의 自律遵守風土를 조성하기 위해서 94년 11월에 설립된 한국공정경쟁협회 등을 통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사업자단체 및 업체들에게 업종별 自律遵守規範(Compliance Program)을 작성·보급하며 기업의 경쟁질서 준수 정도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職權調査對象業體의 선정이나 우수기업 표창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정성 평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WTO 체제 출범과 경쟁정책의 전개 방향

기획특집

세계 경제는 WTO의 출범으로 무역장벽이 점점 무너짐으로써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변하고 있다.

무역장벽의 철폐는 우리 기업이 세계의 모든 기업과 제한없는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건 속에 우리의 경쟁 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까? 정부, 업계, 학계의 입장에서 본 우리의 효율적인 경쟁 정책을 알아본다.

정 부 자율과 경쟁은 WTO 시대의 유일한 생존전략 최종찬

업 계 대기업 규제정책은 경쟁촉진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전대주

학 계 예상되는 국제적 경쟁질서에 대한 대책이 필요 이승훈